

의안번호	2115229
의 퇴 인	정점식 의원
회 답 일	2022. 5. 12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
대한 감면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-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의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를 신설(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)
 -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과 배당소득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
 - 단,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수혜 제외
 - 개정안에 따라 상기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를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에게도 적용하고, 분리과세 세율을 2023년부터 현행 9%에서 5%로 4%p만큼 추가 인하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 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연령과 영농·영어 기간 및 의사에 따라후계농어업인¹⁾ 및 청년농어업인²⁾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

[표 1]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현행 및 개정안 비교

	현행	개정안
비과세	2022년 12월 31일까지	2022년 12월 31일까지
저율과세	2023년: 5% 2024년 이후: 9%	2023년: 1% 2024년 이후: 5%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1) 동법 제2조제1호, 농업 또는 어업(양식업을 포함)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며 총 영농 또는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
2) 동법 제2조제2호,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자

Ⅲ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후계·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출 수혜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

○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의 조세지출 실적은 아래와 같이 보고되고 있음

－ 다만 후계·청년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액은 별도 파악되고 있지 않음

[표 2] 2015~2020년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조세지출액	7,666	5,673	5,521	5,926	5,859	4,863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년도 자료

□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후계·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출 수혜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함

○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로 「농림어업총조사」를 들 수 있으나 해당 조사만으로는 후계·청년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식별할 수 없음

－ 청년농어업인의 분류는 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만 요구하지만, 후계농어업인은 연령(만 50세 미만)과 더불어 경력 요건(총 영농 또는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)까지 충족되어야 하므로 「농림어업총조사」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연령만으로 후계농어업인 인구가 정확히 식별될 수 없으며³⁾ 관련 부처 또한 후계·청년농어업인의 인구 분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⁴⁾

○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
－ 후계·청년농어업인이 기존 조세지출의 수혜대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, 유형별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 중 후계·청년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하나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

3) 농업, 어업의 경영, 창업 또는 취업 의사라는 주관적인 요건은 배제된 상태

4) 2022. 4. 28.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및 2022. 5. 3.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, 어촌어항과 질의 결과

-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1과
과	장 박연서
추계세제분석관	문석휘
연	02-788-4669
락	slugnoid@nabo.go.kr
처	
